

의안번호	2218671
의 퇴 인	박찬대의원
회 답 일	2026. 7. 9.
추계번호	26B2469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설립)	바이오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부설기관)	바이오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재량규정
3	안 제6조(임원)	바이오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총장)	바이오과기원에 총장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평의원회)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바이오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출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바이오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바이오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오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8조(학위과정 등)	바이오과기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19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바이오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21조(교원 및 연구원)	바이오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바이오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研究員)을 둔다.(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26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12	안 부칙 제2조(설립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바이오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제2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첨단바이오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연구기관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 위치·방식 및 규모, 운영하는 학위과정의 내용, 교·직원 및 연구원의 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식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유사 사례로, 과학기술 전반의 인재 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총 4개의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가는 각 과학기술원의 설립 근거 법률 등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원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현황

학교명	설립 년도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 (2025년 기준)	대학·학부 등
한국과학기술원	1971	2,819억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AI대학,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경영대학, 융합인재학부, 안보융합원 등
광주과학기술원	1993	1,185억원	정보컴퓨팅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명·의과학융합대학, 인문사회과학부, 융합기술원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04	1,156억원	기초학부(기초과학, 기초공학, 인문사회 등 기본 교육 이수 후 전공 설계), 교양학부, 반도체공학과 등
울산과학기술원	2007	1,081억원	학부대학(인재융합학부, 미래학부, 인문학부), 공과대학, 정보바이오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과학부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안에 따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바이오과학기술에 특성화된 인재 양성 및 학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과학기술 전반의 인재 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는 4개 과학기술원과 비교 시 학위 과정 등 담당 업무가 상이할 수 있으나, 제정안과 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법률 간 설립 및 임직원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국·공유 재산 양여, 학위과정 등 조문 구조 및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정을 위해 가장 최근 건립¹⁾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지원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음

※ [참고자료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요

※ [참고자료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부 출연금 지원 현황

[표 2] 제정안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의 유사 조항 비교

제정안 조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문
안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안 제4조(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안 제6조(임원)	제5조(임원)
안 제8조(총장)	제7조(총장)
안 제9조(평의원회)	제12조의3(평의원회)
안 제11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안 제1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안 제18조(학위과정 등)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안 제19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안 제21조(교원 및 연구원)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안 제26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자료: 제정안 등 내용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울산과학기술원이 가장 최근 과학기술원으로 설립(2007년)되었으나 기존에 건립되었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사례로, 가장 최근에 건물 건립 등을 통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출자료)

□ 설립 연혁

- 2003. 1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제정
- 2004. 9.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등기
- 2008.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
 -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변경(법률명 변경 및 학위과정 추가 등)
- 2009.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 등기
- 2009. 3. ~ 2014. 4. 학위과정시설 및 연구시설 건립
 - ※ 이후 2025년 현재까지 '2차 기숙사, 비슬창의융합관(연구시설), 교원사택' 추가 건립
- 2009. 5. 학위과정 기본계획 수립
- 2011. 3. 석박사 과정 운영
- 2014. 3. 학부과정 운영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현황(2025. 8. 기준)

구 분		내 용
재학생	학부	938명
	대학원	1,014명
교직원 등	교원(총장 포함)	147명
	연구원	130명
	직원	276명
부지 면적		671,275㎡
건축물 연면적		288,652㎡ *설립 후 5년간 연면적: 256,791㎡
2025년 예산		2,738억원 (국가출연금 1,156억원)

주: 교직원 등 인원에는 무기계약직 인원 포함

[참고자료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부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관운영	656	3,795	4,844	5,403	5,861	5,951	8,216	11,119	14,431	16,700	18,734
사업비	4,084	5,526	5,250	5,450	5,868	10,761	17,761	38,823	52,407	61,955	67,246
시설비	2,510	5,694	—	4,000	25,624	34,149	76,950	13,206	2,432	—	—
합 계	7,250	15,015	10,094	14,853	37,353	50,861	102,927	63,148	69,270	78,655	85,980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관운영	20,049	21,922	24,232	26,695	40,385	41,641	42,237	43,262	43,990	44,911	46,730
사업비	68,054	65,974	63,712	61,991	45,128	42,427	44,809	46,638	47,403	44,931	54,717
시설비	—	—	—	3,200	1,000	1,000	1,600	1,600	3,532	16,101	14,150
합 계	88,103	87,896	87,944	91,886	86,513	85,068	88,646	91,500	94,925	105,943	115,597

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으로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명 변경 및 학위과정 추가 등)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설립(2009. 1. 설립 등기)됨

자료: 대구경북과학기술원